

## 중화인민공화국 (3등급)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완전히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인신매매 방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기준 준수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3등급을 유지했다.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경주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성과 관련된 인신매매 범죄 방지를 위한 기존 보호 조치를 강조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는 정부 공무원의 책임을 열거한 새로운 여성권익보호법을 채택하고, 해외에서 인신매매 혐의가 있는 중국 국적자를 인도하기 위해 외국 사법 당국과 협력하며,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일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당해 보고 기간 동안 신장 위구르 자치구(신장)에서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을 비롯한 기타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탈급진화(deradicalization)”를 가장한 대규모의 자의적 구금 등 방식을 통한 정부의 광범위한 강제 노동 정책 또는 관행이 있었다. 중국 당국은 다른 성(省)에서도 광범위한 강제 노동 정책 또는 관행을 계속 시행했고, 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다른 종교적 소수 집단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종교적·민족적 소수 집단 및 그 가족에 대한 감시, 괴롭힘, 위협, 인도 요청 등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이들의 강제 송환 및 억류를 시도하여 이들이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강제 노동 정책 또는 관행에 더욱 취약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명백한 강압적 요소가 있는, 표면상 “빈곤 퇴치” 및 “노동 파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티베트인들의 직업 훈련 및 제조업 일자리 배치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일대일로 (BRI) 프로젝트 또는 기타 중국이 관여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중국 국적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중국 당국은 관련 채용 채널, 계약, 노동 조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 당국은 착취 피해자에 대한 신원 확인 또는 지원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완전한 법률 집행 자료를 6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신원 확인 또는 보호 서비스로의 인계에 관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 우선 권고사항:

신장 및 기타 성(省)의 수용소 및 수용소 관련 제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의적 구금과 강제 노동을 폐지하고, 그곳에 구금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 시설 및 정부 구금시설로 전환된 비정부 시설 내에서, 형사처벌 절차 외의 방식으로 정부 관리들에 의해 부과되는 강제 노동을 종식해야 한다.

위구르족, 티베트인을 비롯한 기타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을 인신매매 위험에 처하게 하는 강압적인 노동력 이동, 의무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차별적인 고용, 특정 집단 대상의 도시 재정착 목적 강제 이주 정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해외 거주 중인 중국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신장으로의 귀환과 그에 따른 강제 노동 및 박해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괴롭힘, 위협, 불법적인 차별적 이민 정책 등 초국가적 탄압을 활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업대상국(receiving country)과 함께 일대일로 프로젝트 사업장과 관련된 채용, 계약 및 근로 조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부담의 채용 수수료 및 보증금 부과 금지 조치를 집행하며, 중국 영사 관계자들에게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에서 이뤄지는 해외 강제 노동의 피해자인 중국 국적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을 지원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강제 노동 의심 사례를 비롯한 온라인 사기 조직과 해당 사기 조직 및 그와 관련된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관여 단체에 대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법률 집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법에 정의된 모든 형태의 성 착취 및 노동 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된 정부 관리들을 비롯한 인신매매범을 적법 절차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사 및 기소하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포함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남성 피해자, 노동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에서 귀국한 중국인 피해자와 더불어 이주 노동자, 중국인 및 외국인 어부, 외국인 여성, 북한 노동자, “매음(prostitution)”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여성 및 아동 등 취약 계층의 피해자를 비롯한 중국 전역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파악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 서비스에 연계하기 위한 사전적(事前的),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고 체계화하며, 일선 당국자들에게 그 이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불법·미등록 직업 소개소 금지, 국제 선박 등록 의무화, 선박 면허 교부와 등록 조업 지역 및 선원 명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공개, 무작위 선상 검사 실시, 항만 소재국 당국과의 협력 하에 원양어선단(DWF) 강제 노동 범죄 조사 및 형사 기소 등을 통해 중국 수산업 내 선원 노동 조건에 대한 투명성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저지른 불법 행위만을 이유로 부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 착취 및 노동 착취 인신매매의 남녀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상담과 의료, 사회복귀, 기타 재활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에게, 복귀 시 학대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국가,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추방하는 대신 다른 법률적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파트너에게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신원 파악,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2000 UN TIP Protocol)를 홍콩에 적용해야 한다.

## 기소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률 집행 노력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대량 구금 및 강제 노동에 대해 광범위한 법률 집행 자원 및 준(準)군사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중국 형법은 일부 형태의 성 착취 및 노동 착취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했다. 동법 내 여러 조항은 성

착취 범죄의 기소에 활용될 수 있다. 동법 제240조는 “여성 또는 아동의 납치 및 인신매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기망에 의한 납치, 인신의 유괴, 매수, 매도, 수송, 수령, 판매 목적의 이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상기 행위를 착취 목적과 명시적으로 결부시키지 않아 국제법 상 인신매매의 정의와 차이를 보였다. 동 조항은 여성과 아동의 납치 및 판매에 대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치된 여성이 “매음”을 하도록 강요당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러한 처벌은 강간 등 다른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형량에 준하는, 충분히 엄격한 수준이다. 동법 제241조는 납치된 여성 또는 아동의 인신매수를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拘役: 단기 구금) 또는 관제(管制: 당국 통제 하 석방 조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240조와 마찬가지로 동 조항 또한 (역주: 범죄의 성립을 위해) 인신의 매수가 반드시 착취 목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에 따른 처벌이 그 자체로는 충분히 엄격한 수준이 아니지만, 납치된 여성이나 아동을 매수하여 “강제 성관계”를 가하도록 할 경우 동법의 강간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추가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동법 제358조는 강제 성매매(매음강박)를 범죄로 규정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범죄가 14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된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이 적용되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과 동시에 벌금 부과 또는 재산 몰수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처벌은 강간 등 다른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형량에 준하는, 충분히 엄격한 수준이다. 동법 제359조는 타인의 매음(성매매)을 수용·유인·알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범죄가 14세 미만 여아와 관련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은 충분히 엄격한 수준이지만, 해당 범죄가 14~17세 여아와 관련된 경우에 대한 처벌은 강간 등 다른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형량에 준하는, 충분히 엄격한 수준이 아니다. 노동 착취 인신매매 범죄는 동법 제244조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폭력·협박 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역을 강요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위해 인력을 모집·운송하거나 타인에게 노역을 강제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은 충분히 엄격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형법 제240조와 제241조에 규정된 여성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금지를 비롯해 중국 법률에 따른 기존의 여성 보호를 강조하는 여성권익보호법을 채택했다. 동법은 각급 정부 관리가 이러한 범죄에 피해를 받은 여성을 신고·구조하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관련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중국 국적자들을 계속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 당국은 법률 집행 관련 종합적 자료를 집계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여성을 납치하거나 성 착취 인신매매로 판매한 인신매매범보다 인신매매 피해자로부터 상업적 성을 구매한 인신매매범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법률 집행 활동에 대해 공개된 기록 중 일부에는 국제법 상 인신매매의 정의를 벗어난 범죄(이주자 밀입국, 아동 납치, 양육권 분쟁, 착취 목적이 없는 사기성 입양 등)가 계속 포함되어 있어 진전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중국 정부는 강제 노동의 징후가 있는 대부분의 사건을 사법부(한국의 법무부에 해당)를 통해 행정 문제로 처리했고 인신매매 방지 법률에 따라 기소를 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관측자들은 중국 당국이 노동법을 집행할 가능성보다 강제 노동에 주목하는 인권 옹호자 및 단체를 박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법원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 노동 계약 위반,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상기 법률은 모두 (역주: 인신매매 방지 법률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연도에는 중국 당국이 관련 형법 조항 별 유죄판결 자료를 집계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러한 인신매매 사건 중 대다수(특히 상업적 성 착취와 연관된 경우)를 동법 제240조가 아닌 제358조에 따라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해 보고 기간 중 인신매매범이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가 최소 2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그 중 한 사건에 대해서는 납치 여성 매수 및 강간 혐의로 42개월 형을, 나머지 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주자 밀입국 및 인신매매 혐의로 11개월 징역형과 8,000위안(1,160달러)의 벌금을 확정했다.

중국 공안부는 인신매매 의심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건수(2016년 1,004건)를 6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나, 2022년 1월~4월까지 과거 연도 발생 사건 70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월~4월까지 보고된 건수는 700건이었다.) 중국 정부는 기소 개시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고, 과거 연도에 기소가 개시된 건의 지속 여부에 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2021년 기소된 건수는 86건이었다), 인신매매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 또는 관련 범죄 혐의의 성격에 관한 추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사기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자들에 대한 조사 또는 기소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인신매매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한 제한적인 자료를 공공 사법 데이터베이스 상에 공개했으나, 해당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완전성이 부족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확정 판결을 내린 “여성 인신매매 및 아동 납치”, “매음강박”, 또는 강제 노동 사건의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여성 인신매매 및 아동 납치” 546건, “매음강박” 475건, 강제 노동 38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당해 연도 중국 정부는 인신매매범에 대한 유죄 판결 건수를 보고하지 않았다 (2021년 9건, 2020년 미보고, 2019년 2,355건). 또한 중국 정부는 인신매매범에 대한 정확한 선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9명의 인신매매범에게 1~15년의 징역형과 5,000~50,000위안 (725~7,250달러)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해외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중국인 관련 사건,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외국 국적자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해외 인신매매 혐의가 있는 중국인을 인도하기 위해 유럽, 중앙아시아, 남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정부와 법률 집행 관련 협력을 펼쳤다. 중국 정부는 메콩강 하류 지역 5개 국가와 인신매매 방지 협정을 유지하여 해당 국가 국민들이 중국에 소재한 사람들과의 강제 또는 사기 결혼을 통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일부 성(省) 정부는 이와 유사한 자체 협정을 접경 국가의 상대 기관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34개국의 법률 집행 및 내무부 해당 기관과의 인신매매 방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과거 보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협력 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경 간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양자 간 협력 요청에 대해 중국 측 당국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 법률 집행 당국자의 지속적 전언이 있었으며, 법률 집행과 관련된 중국의 번잡한 관료주의가 공동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일부 외국 관리들은 메콩강 하류 지역 국가들의 경제특구(SEZ) 및 중국 국영 기업이 운영하는 태평양 지역의 단일 외국인 투자 사업 단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사기 조직을 비롯한) 인신매매 관련 조사를 시도할 때 관할권 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중점을 둔 인신매매 사건 기소에 대한 법률 집행 기관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재원을 배정했다고 2년 연속으로 보고했다. 관측자들은 형법 개정 사항에 관한 당국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 착취 인신매매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상업적 성매매 범죄 조직을 비호하거나 그러한 조직에서 이익을 수취한 혐의로 체포된 부패 공직자와 관련된 중국 언론의 보도가 지난 몇 년 간 심심치 않게 있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들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제명, 공직 해임, 벌금, 사법 절차 회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수사, 기소 또는 유죄 판결 건수에 대한 통계는 제공하지 않았다. 법률 집행 당국자들이 성 착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이를 허용 또는 직접 조장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 기소, 유죄 판결, 과태료 부과 또는 직급 강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았다. 중앙당-중앙정부 당국자를 비롯한 각급 공직자들도 투르크족 그리고/또는 무슬림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구금, 정치사상 주입(political indoctrination), 노동력 파견 캠페인을 지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강제 노동에 연루되었으며, 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 직접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들과 다른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도 비슷한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장 당국은 신뢰할 수 있는 강제 노동 혐의에 대한 조사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관측자들의 해당 지역 내 현장 접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

##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국내 강제 노동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해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중국 국적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착취 상황에 처한 일부 피해자를 구출하는 활동을 지속했으나, 중국 정부는 확인된 피해자 수 또는 보호 서비스로의 인계 건수에 대해 6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2022년 법률 집행 자원을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조치에 투입하면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송환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중단했다.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성 착취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여아의 신원 확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반면 강제 노동 피해자의 신원 파악 노력은 거의 완전히 배제했다. 중국 인신매매 방지 법령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된 관계로, 주요 인구 집단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범위가 크게

제한되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14세 이상의 남성 또는 남아와 관련된 성 착취 인신매매 또는 강제 노동 착취 징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2022년 한 해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 집단인) 실종 아동을 추적하여 착취 상황에서 구출하는 휴대전화 앱 기반(app-based) 시스템 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021년 4,300명, 2020년 4,600명 이상의 실종 아동이 발견된 바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실종 아동 발견 후 신원 확인 또는 지원 서비스로의 연계 조치에 관한 통계나 정보도 3년 연속 제공하지 않았다. (2019년 4,000명 이상의 실종 아동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120명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MOHRSS)는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3개의 24시간 핫라인 채널(노동 문제, 아동 보호, 젠더기반 폭력[GBV] 관련 각 1개씩)을 운영 및 홍보하고 있으나, 중국 당국은 해당 채널의 이용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피해자 식별, 후속 조치 연계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국제기구가 주최한 연수 활동에 참여했(지만 해당 3가지 분야 모두에서 상당한 미비점을 드러냈)으며, 2022년 메콩강 유역을 아우르는 초국가적 연계 체계 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의 워크숍에 동참했다. 중국에는 표준화된 국가적 연계 제도가 없으나, 중국公安부는 상업적 성매매 및 강제·사기 결혼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절차를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전국 법률 집행 당국자를 대상으로 공표한 서면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公安부 관계자는 “매음”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 징후를 파악하는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음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구금 기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는 2016년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법 당국은 “매음” 범죄 혐의로 외국인 여성을 체포하고 구금한 후, 해당 여성에게 성 착취 인신매매 피해 징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최장 8개월 간) 구금한 후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한 바 있으며, 관측자들은 2022년에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일부 신원 미확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금하고 체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범한 상업적 성 판매 및 이민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했다. 또한 일부 성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마약 중독자 및 성행위를 의뢰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과 함께, 강제 노동 여건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재활 수용소”에 구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는 피해자 보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2022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쉼터 10개소과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쉼터 8개소, 전국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쉼터 2,300여 개소를 운영한다고 과거 보고한 바 있으나, 이러한 쉼터에 대한 정보는 4년 연속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 민정부(民政部),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지역 기반 비정부기구가 피해자에게 쉼터, 의료, 상담, 법률 지원, 사회 서비스와 더불어 일부의 경우 재활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피해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중국 정부의 보고는 없었다. 피해자의 지역과 성별에 따라 전문적 조치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중국 남부의 경우 임시변통식 인계 절차가 시행 중으로 피해자 보호 서비스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남성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보호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훨씬 낮다고 전해진다. 중국 법률은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중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촌 국경 지역 당국자들은 일부 외국인 여성과 여아들이 중국 남성과의 강제·사기 결혼을 통해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임시 쉼터를 제공하고 송환 자금과 호송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임시적인 것이었으며, 많은 경우 관료주의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 내륙으로 훨씬 들어간 지역의 일선 당국자 사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보편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국인 피해자들은 피신 와중에 이러한 내륙 지역에 진입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학대 상황을 당국에 알렸음에도 바로 체포된 후 이들의 중국인 “남편”에게 강제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부의 경우 해당 남성의 가족에게 뇌물을 받는 대가로 인계되었다. 중국 당국은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들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최장 8개월 간 구금하고 이들에게 중국인 “남편”에게 돌아가거나 출신국으로 송환되거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송환을 선택한 경우 자녀를 함께 데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가 장쑤성에서 강제 축첩(蓄妾) 및 출산의 피해자로 확인된 한 여성을 방문하거나 해당 여성과 연락하는 것을 차단했고, 해당 여성에 대한 피해자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해 보고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SNS 게시물을 검열했다. 성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낙인찍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보호 서비스 접근을 단념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MOHRSS)는 성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일부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전언이 있으나, 중국 당국은公安부가 이러한 서비스에 인계한 피해자의 수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 내 외국 비정부기구를 중국公安부 감독 하에 두는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와 범죄에 취약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부담스러운 요건과 제한의 부과가 계속되었다.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은 피해자에게 쉼터 또는 기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조치로 인해 2022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22년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의 수사 또는 기소에 협조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피해자 치료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법률 집행 기관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지는 않았으나,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했으며 수사 중인 법률 집행 기관과의 의사소통 외의 대안은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 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 기소 과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인신매매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측자들은 중국 당국이 모든 사건에 대해 이러한 혜택을 공평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의 부모에게 39만 5,000위안(5만 7,270달러)을 지급하도록 복수의 형사 피고인에게 명령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러한 명령이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내려진 최초의 지급 명령이라고 홍보했다. 강제 결혼 사례 성 착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부수적 지표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 혼인 사례 중 일부는 촌락 단위에서 중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과거에는 사법부 관리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일부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 정부 산하 비정부기구 소속 관측자들은 피해자 중 일부가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지원 관련 중국 법령은 형사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증인이나 원고로서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법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인신매매범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이전 녹음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일부 외국인 피해자에게 경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수사에 협조하도록 요구했다.

버마, 라오스, 베트남과의 8개 국경 연락 사무소, 피해자 기금, 핫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합의 등 과거 보고된 중국 정부의 해외 피해자 지원은 실효성이 없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피해자 송환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았다. 타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당국자들이 느슨한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를 통해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 인신매매를 조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일대일로 사업에서 해외 중국 국적자의 노동 착취 인신매매 또한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당국은 해외 망명을 원하는 위구르족, 카자흐족 및 기타 강제 노동 생존자들이 외국 언론 매체와 접촉할 경우 그에 대한 보복으로 감시, 괴롭힘, 협박을 가하고 해당 망명 희망자들의 신빙성을 훼손하려 시도하는 한편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의 후원을 받는 노동 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게 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티베트인,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기타 투르크족 그리고/또는 무슬림 소수 민족 구성원을 비롯한 종교 및 소수 민족 구성원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영 원양어선단 선박이나 광범위한 연안 근해 어선에 고용된 수천 명의 취약한 이주 선원들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징후를 파악하거나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조치에 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 강제 노동 상황에 처한 중국 어부들은 중국 귀환 시에도 현지 당국에 학대를 신고하거나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외교 공관 당국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또는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중국 영사관 직원들은 피해자가 현지 중국 공관에 학대를 신고하는 경우를 비롯해 해외 일대일로 사업의 관리 하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중국 국적자를 적극적으로 식별, 대응 또는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중국 지방 당국은 때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일대일로 관련 민원에 대해 대응에 나서, 일부 사례의 경우 중국이 운영하는 외국 소재 기업에게 피해자 보호, 보상, 송환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중국 내 북한 이주민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보호 서비스에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인신매매 피해 의심자에게 북한으로의 인도 외에 다른 법적 대안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제3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경유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는 코로나19 관련 국경 폐쇄로 인해 현저히 줄었으나, 중국 당국은 탈북 망명 신청자들을 계속 구금하였고 일부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다.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은 강제 노동수용소 내 구금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 또는 사망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징후를 조사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 북-중 접경지대 인근에서 난민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려는 유엔 기구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한이 계속되었다.

---

## 예방 노력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었으며, 인신매매를 사주하거나 실행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외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으며, 이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기타 사회 병폐를 척결한다는 구실 아래 집단 학살(genocide)과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르고, 차별적 감시와 소수자 집단을 수용소 내 강제 노동 상황에 몰아넣은 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차별적 감시 및 민족-인종 관련 자료 수집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해졌다. 중국 정부는 인권 침해 및 국가 후원 강제 노동과 관련된 인신매매에 관한 검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기를 거부했으며, 관련 논의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했다. 비정부기구 추산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이후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기타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 구금과 정치사상 주입 정책을 지속했으며, 수천 명의 피구금자를 다른 성(省)에 위치한 수십 개소의 강제 노역장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계속했다. 중국 당국은 격리 구역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수천 명의 위구르족 청년을 중국 전역의 제조업 일자리에 강제 투입했다. 중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신장에 본부를 둔 기업과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탈급진화(de-radicalization)”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 안전 조치의 미명 하에 행해지는 국가 후원 강제 노동에서 이들 단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중국 지방 정부와 기업들은 신규 제조 시설 설립 후 이러한 목적으로 수감자를 수용하거나 이송하는 대가로 세금 감면과 재정 보조금을 받았으며, 당국자들은 이 과정에서 직무 상 승진 및 기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때에 따라 중국 지방 정부는 상기 구금 시스템에 대해 특별히 설정된 구금자 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자의적으로 또는 허위 범죄 혐의와 행정적 위반(산아 제한 위반 포함)을 근거로 무슬림들을 체포한 사례도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수용소 시설 직원 중 일부(직업 및 언어 강사 포함)를 강제 노동을 통해 충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시설에서 “졸업”이 승인된 피구금자 중 상당수를 수용소 인근이나 다른 성(省)의 외부 제조 현장으로 파견하여 강제 노동을 시켰다. 다른 일부 피구금자에 대해서는 이송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을 (규모가 확대 중인) 별도의 공식 감옥 체계 내의 강제 노동에 처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의적인 방식을 통해 “농촌 잉여 노동력”으로 지정된 비(非)수용 소수민족 공동체 구성원 중 일부를 신장 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강제 노동을 통해 착취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일부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을 직접 제조업 부문 강제 노동에 투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금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신장 내 소수민족 공동체에게 여권 발급 금지를 비롯한 심각한 여행 제한을 계속 시행했고, 이로 인해 자의적 구금 및 국가 후원 강제 노동에 대한 이들의 취약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위구르족의 중국 여권과 타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비롯해 무슬림 소수민족 출신 해외 거주자의 중국 여권에 대한 압수, 취소, 또는 갱신 거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을 신장으로 유인하여 수용소 내에 구금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강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이들에게 입막음 그리고/또는 귀환을 강요하려는 시도로서 신장에 있는 이들의 가족을 위협, 구금, 강제 입원시켰다는 보고도 있었다. 중국은 신장에서의 강제 노동 착취를 비롯한 인권 유린을 피해 해외 망명을 신청한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 집단 구성원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전국 차원으로 보면, 일부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는 한족 학생들에게 의무적 공장 노동을 비롯한 강제 노동의 징후가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표면 상의 “빈곤 완화” 조치라는 명목으로 할당량 기반의 “잉여 노동력”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티베트 농촌 지역 목축업자와 농부 수천 명을 중국 전역의 “군대식” 직업 훈련과 제조업 직무에 계속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노골적인 체포나 강제 실종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관측자들은 티베트 지역을 장악한 중국 중앙 정부의 사회 통제 시스템 하에서 개인의 참여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강압적인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배치 후 티베트인 중 일부는 제조업 분야의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 중국 당국은 또한 대규모 강제 이주를 통해 티베트 농촌 경제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국가 부문 일자리 구직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달라이 라마와의 모든 관계를 포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인신매매에 대한 티베트인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전세계 원양어선단 선상 작업에 비공식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선원들의 인신매매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 몇 년 전 시작한 시범 프로그램의 계속 시행 또는 확대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중국 소유 기업 및 중국계 기업은 해외 일대일로 프로젝트 사업장에서 중국인과 외국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근로자들이 자비 지불 수수료로 인해 미등록 브로커에 대한 채무 부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채용 절차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계약에 악성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해외 일대일로 사업장에 고용된 다수의 중국 국적자들은 당초에는 관광 비자로 목적지 국가에 입국하여 계약 없이 일하도록 강요 받았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미비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구직자로부터 채용 수수료 또는 보증금 징수를 금지하고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일대일로 대상국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업에게 노동권 보호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2017년 발표한 정책 및 규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상기 조치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보고하지 않았다. 일대일로 관련 채용 과정, 노동 계약, 근로 조건에 관한 국제 사회의 정보 입수 능력이 제한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단일 관리 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것, 또는 전세계 일대일로 사업(이를 위한 양자간 협상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었다)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최근 몇 년 간 다른 양자 협정을 통해 중국 출신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의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임신 또는 질병 시 즉각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규정 및 수수료를 비롯한 악성(이며 불법의 가능성도 있는) 계약 규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중국 노동자가 노동력 유지를 위한 강압적 조치로서 부채 부과 또는 징벌적 추방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 정부는 당해 보고 기간 중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홍콩 내 비정부기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치적 압력 및 운영 제한 조치는 홍콩 현지 당국과의 인신매매 방지 관련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비정부기구들은 중국 국적자들이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사이버 사기 조직 관련 노동 착취 인신매매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 당국자와 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 국가에서 일부 중국 국적자를 송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잠재적 피해자에게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 국적자가 다수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이버 사기 조직 관련 노동 착취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조치의 조율을 위한 부처 간 연례회의에 관한 보고는 3년 연속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2021-2030)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동 행동 계획은 여성과 여아를 중심으로 사기 입양 방지, 사이버 시스템을 이용한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 퇴치, 노동력 모집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남성 또는 소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전혀 부재했고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었다. 중국 공안부는 2022년 7월 해당 행동 계획을 위한 이행 계획 개발에 착수했다. 관측자들은 중국 정부가 행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주로 법률 집행과 언론 캠페인을 통해) 투입했다고 평가했으나, 당해 보고 기간 중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이행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행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인신매매 방지 활동 자금 확보에 관한 사항을 6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2016년 기준 5,500만 위안[797만 달러] 이상이 투입된 바 있다.) 해당 행동 계획 상에서 수십 종의 업무 절차를 주도 또는 지원하도록 지정된 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성(省)별 지부 조직을 유지했다. 중국 중앙 및 지방 당국은 일부 인신매매 형태에 관한 언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아동 납치와 강제 및 사기 결혼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중국 당국자들은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인신매매 예방 연수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외교관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연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평화유지군 파병 대상 군 장병에게 인신매매 방지 관련 사전 연수를 시행하지 않았다.

2022년 신장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그리고 국가 후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국제 공급망 오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중국 당국은 정책 변경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정부와 관련 사업체는 이러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는 대중 대상 메시지를 통한 해당 혐의의 완강한 부인, 국가가 발주한 정치적 동기 기반 학술 연구, 면화 생산 및 수확 기계화 관련 위조 데이터, 무역 상대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localized) 선전 캠페인, 거짓된 공급망 정책 체계를 수립하여 기존의 국제 감시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제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비판적인 외국 정부 당국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압력 등을 통해 이뤄졌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시행했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이 중국 내 인신매매 범죄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호구(거주지 등록) 제도는 (특히 해외에서 착취를 겪은 후 중국으로 귀국한 피해자의) 사회 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통해,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등록 거주지 관할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는 상황 조성을 통해 내부 이주민의 인신매매 위험을 계속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에게 이주 노동자가 거주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점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농촌 출신 한족 이주민과 소수 민족 구성원에게는 이러한 거주 허가 취득이 불가능하게 하는 불균형적 조치를 취하여, 이들이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접근과 관련하여 겪는 제한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는 상업적 성행위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동 성 관광 범죄에 관한 광범위한 보고가 있음에도, 해당 혐의로 중국 시민을 조사하거나 기소했다는 중국 정부의 보고는 없었다. 2010년 중국 정부는 마카오를 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2000 UN TIP Protocol) 후속 의정서 당사자로 포함시켰으나, 홍콩에는 해당 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 인신매매의 실상

지난 5년 간 보고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범들은 중국 내에서 내국인 및 외국인 피해자를 착취하는 한편, 중국에서 해외로 나간 피해자들 또한 착취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 전역의 다른 국가 및 국제 해상 산업에서의 외국인 인신매매에 중국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조직과 지역 폭력단은 중국 여성과 여아들을 중국 국내 및 해외 성 착취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이들을 모집하여 도시로 데려간 후, 사기성 일자리 제안과 더불어 거액의 여행 비용 부과, 여권 압수, 피해자 감금, 또는 신체적·재정적 위협을 통한 상업적 성관계 참여 강요 등의 강압적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중국의 국가 거주지 등록(호구) 제도는 농촌 주민의 합법적인 거주지 변경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으며, 1억 6,9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내부 이주민은 벽돌 공장, 탄광, 공장 등에서 이뤄지는 강제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당 사업체 중 일부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느슨한 단속을 이용한다. 일부 국가의 중국 국적자들은 중국 기반 기업, 중국 국적자 또는 중국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투자하여 소유, 관리 그리고/또는 운영하는 일대일로(BRI)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 징후를 보이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중국 국영 범죄 조직은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사이버 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자 및 외국인 피해자를 범죄 활동에 강제로 가담시키고 있다. 아프리카 및 아시아 남성들은 전세계 중국 원양어선단에서 조업하는 중국 국적 및 중국 국영 선박과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하여 강제 노동 징후가 있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 출신 남성들 또한 이러한 선박에서 강제 노동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일부 국가 출신 여성과 소녀들은 강제 가사 노동, 강제 축첩(concubinage)과 그로 인한 강제 출산, 중국 남성과의 강제·사기 결혼을 통한 성 착취 인신매매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과 아동, 그리고 부모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친척에게 맡긴 아동(640만 명으로 추산)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과 구걸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 국가 기관은 자의적 대량 구금, 정치사상 주입, 노동력 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주로 무슬림 소수 집단과 티베트인들을 강제 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후원 강제 노동이 중국 내에 만연해 있다. 201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개인을 강제 노동이 포함된 초법적 구금에 처하는 징벌적 제도이자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노동을 통한 재교육”(RTL)을 폐지하는 결정을 비준했다. 중국 정부는 대부분의 RTL 시설을 2015년 10월까지 폐쇄했으나, 시민사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RTL 시설을 국가 후원 마약 재활 시설이나 행정 구금 시설로 전환하여 강제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장위구르자치구(신장)에서 주로 무슬림 그리고/또는 투르크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대량 구금 및 정치사상 주입 캠페인 하에서 국가 후원 강제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안면 인식 및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비롯한 차별적인 감시 기술과 자의적 행정·형사 규정을 이용하여 2017년 이래로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회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타지크족, 우즈베크족을 1,200여 개의 “직업 기술 교육·훈련 센터”에 구금했다. 해당 센터는 “탈급진화”라는 명목 하에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수용소이다. 국제 관측자들은 중국 당국이 “범죄 탐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티베트 전역의 티베트족으로부터 DNA를 수집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감시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수용소 당국은 일부 피구금자들에게 바느질과 중국어 교육 등 수용소 내 직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 구금 중, 그리고 시설 “졸업” 후에도 상기 수용 시설, 중국 정부 당국, 그리고/또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체는 피구금자 중 상당수를 해당 시설에 인접해 있거나 그 외부에 위치한 의류, 자동차 부품, 신발, 카펫, 참마(yam), 식품, 건축 재료, 명절 장식, 건물 자재, 태양광 발전 장비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및 기타 재생 에너지 부품, 가전제품, 침구, 모발 관리 제품, 청소 용품, 개인 보호 장비 안면 마스크, 화학 물질, 의약품 및 기타 국내외 유통용 상품 생산 공장 내의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강압적인 여건에는 신체적 폭력 위협, 여행 증명서 및 신분증 압수, 강제 약물 복용, 신체적·성적 학대, 고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 중 일부를 강제 노동에 투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용소 구금 위협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의 한족과, 기독교인을 비롯한 기타 소수 종교 집단 구성원들도 이러한 제도 하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중국 국영 기업들이 수용소 인근에 공장을 설립하고 다른 성(省)의 위성 제조 시설로 이송된 수감자들을 수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기타 재정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지방 정부는 최저 임금의 일부만을 받거나 심지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러한 시설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수감자 한 명당 추가 자금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중 최소 8만 명을 다른 성(省)으로 이송하여 빈곤 퇴치 및 산업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이뤄지는 강제 노동에 투입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아마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범죄 혐의를 씌워 공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 전국 100여 개 도시에 위치한 교도소로 이송해 추가적인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명백한 강제 노동 징후가 있는 국가 후원 “잉여 노동력” 및 “노동력 이전” 사업을 통해 총 260만 명의 소수민족 구성원을 신장 및 중국

전역의 농업 및 제조업 사업장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 당국은 신장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남성의 가족들 또한 해당 남성이 없는 동안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가짜 직업 훈련 센터에 억류된 가족들은 진정한 교육·직업 훈련 및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빈곤과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가족들은 빈곤선 이하로 생활 수준이 추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성 착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된다.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 내 피구금자의 저연령 자녀들을 국영 기숙학교, 고아원, “아동 복지 지도 센터”에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정치사상 주입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의 종교 활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강요한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동은 직업학교에 배치하며 이들 중 일부는 강제 노동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당국은 신장 거주 가족을 방문하는 일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했으며, 이렇게 구금된 사람들의 자녀들도 보호자 동반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차별적인 민족 동화 정책에 따라 한족 남성들이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 여성들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사 노동 및 기타 형태의 착취로 이뤄지는 강제 노동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무슬림인 이들 소수 민족의 구성원이 해외 망명을 시도하는 경우, 목적지 국가 내에서 진행되는 이민 관련 행정 및 형사 고발과 더불어 중국으로의 인도 및 송환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장 당국은 매년 수천 명의 위구르족 성인과 어린이를 정부 인프라 사업 및 농업 분야 강제 노동에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하샤르(hashar) 제도 하의 농촌 강제 노동을 폐지한다는 공고를 2017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장에서는 약 280만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장 내 일부 지역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경제·준군사 조직인 신장 생산건설병단(병탄, 兵团)을 비롯한 국가 기구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이 유사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탄 연대는 신장 전역에서 최소 36개소의 수용소 농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기 대량 구금 캠페인과는 달리 주로 한족 수감자(대부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인 것으로 여겨지는)를 강제 노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병탄 당국은 수감자들에게 신장의 여러 지역에 새로운 교도소 시설을 건설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들을 석탄, 우라늄, 석면 채굴과 납, 아연 제련 및 비료 생산 부문 강제 노동에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일부 신장 주민들을 태양광 부품, 알루미늄 합금, 실리콘에 사용되는 실리카 채굴 및 가공 부문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병탄은 50만 명의 위구르족 성인과 어린이에게 목화, 토마토, 사탕무(와 함께 사과 및 땅콩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를 채취·가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진행되는 면화 수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위구르족 고용을 금지하는 공식적 차별 고용 정책의 영향으로 위구르족 농부 수천 명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제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족 내부 이주민을 위한 병탄의 새로운 정착촌 건설, 위구르 지역사회 소규모·생계형 농부들의 토지 압류 등을 통한 중국 정부의 표적 강제 이주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계산된 토지 수용으로 인해 위구르 농부들은 강압적인 노동력 이전 프로그램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며,

심지어 이 중 일부는 자신이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땅에서 강제 노동에 투입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섬유 생산에 필요한 강제 노동 투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구르 농경 공동체 전체를 작황 성공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나 공장 인접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측자들은 중국 정부가 신장 내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위구르족 공동체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노동력 이동 상황에 있으나 실제로는 타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티베트인들을 대상으로 상기 언급한 방식과 유사하게 티베트자치구(티베트) 및 인근 성(省)에서 이뤄지는 정치사상 주입 및 강제 감옥 노동 관행의 양상을 보이는 자의적 구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빈곤 완화 조치라는 의도를 띤 할당량 기반의 “잉여 노동력” 이송 프로그램 하에서 농촌 지역 티베트인 수천 명을 전국 각지의 “군대식” 직업 훈련소 및 제조업 사업장에 배치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노골적인 체포나 강제 실종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관측자들은 티베트 지역을 장악한 중국 중앙 정부의 사회 통제 시스템 하에서 개인의 참여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강압적인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에 따르면 기업들이 일부 티베트인들을 공장 내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중국 당국은 일부 불교 승려를 공장으로 개조된 수도원 내에서 진행되는 정치사상 주입과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강제적인 도시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인해 티베트인들은 재정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티베트인들이 채무자가 되어 강제 노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 내 타 지역의 경우, 법정 교육 시설에 구금된 종교·정치 활동가들은 미결 구금 상태에서 형벌 부과 내용 이외의 강제 노동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계속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다른 종교 단체 회원들을 사상주입을 목적으로 구금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을 부과하며, 벽돌 공장, 식품 가공 센터, 의류 및 가정용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생존자들의 보고가 있다. 중국 법률 집행 당국은 일부 중국 및 외국인 여성을 “매음” 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구금 및 교육” 센터에 구금하고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방 당국이 일부 정부 지원 근로-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한다고 전해진다. 일부 교육구에서는 의무 인턴십을 가장하여 학생들에게 제조업 부문 강제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중국 국적자들이 중국 내 대규모 희토류 채굴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 징후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채굴 작업 및 이에 따른 환경 오염으로 인해 고향을 잃은 농촌 공동체는 그 자체로 성 착취 및 노동 착취 인신매매에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일대일로 및 기타 중국 관련 건설 사업, 광산 사업, 공장에 고용된 일부 사업 진행 국가 국적자, 중국 국적자, 기타 이주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 징후를 보이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징후에는 근로자를 부채로 속박(debt bondage)하는 기만적 채용, 자의적 임금 압류 및 원천공제, 계약서 부재를 비롯한 계약 관련 부조리, 여행 증명서 및 신분증 압수, 강제 초과 근무, 사직 시 불이익 부과,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에 대한 허위 약속(인신매매범이 당초 계약 기간 이후에도 노동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긴급 치료 접근 거부, 열악한 근무·생활 환경, 이동 및 외부 통신의 자유 제한, 보복성 해고(고용주와의 성관계 거부 및 성적 학대 신고 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상기 국가 중 다수가 시행한 여행 제한과 중국 정부의 재입국 제한 조치는 이러한 취약점을 더욱 악화시킨다. 특히 팬데믹 기간 중 중국 정부가 신규 인력을 해외 일대일로 사업에 파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기업이 공중 보건 상의 제한을 구실로 중국 국적자를 계약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일대일로 사업장에 묶어 둘 동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중국 국적자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지역 사회에서 현지 아동을 모집하여 위험한 작업이 있는 강제 노동에 투입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영 범죄 조직을 위해 일하거나 그 도움을 받는 인신매매범들은 80여 개국에서 중국 남성, 여성, 아동을 강제 노동과 성 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전락시켰다. 이들은 중국인 남성, 여성, 소녀들을 해외 화교 공동체의 식당, 상점, 농업회사,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한다. 아울러 일부 중국 국적자를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국가의 남성, 여성, 아동을 해외의 고임금 기술직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채용한 후, 대부분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에 위치한 카지노와 상업 단지에서 온라인 도박, 인터넷, 전화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한다. 인신매매범들은 또한 일부 중국 국적자들을 암호화폐 채굴과 기호용 마약 재배·가공·유통에 강제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의 중국 남성들은 공장, 건설 현장, 벌목 및 채굴 작업장에서 임금 미지급, 이동 제한, 여권 보류, 신체적 학대 등 강제 노동의 징후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국 국영 제조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의료용 방호복 제조를 위해 중국 국적자를 강제 노동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신매매범들은 주요 도시, 건설 현장, 오지 광산 및 벌목 사업장, 중국 이주 노동자 밀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중국 여성과 소녀들을 성 착취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기술 인턴 연수 프로그램”의 후원 하에 운영되는 기업들은 식품 가공, 제조, 건설, 어업 분야에서 중국 국적자들을 (많은 경우 빗으로 속박하여)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또한 중국 선원들을 파푸아뉴기니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주변 영해에서 조업하는 타이완의 대단히 취약한 원양어선단 선박과 태평양을 운항하는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하여 강제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신매매범들은 아프리카, 지중해 지역,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현지 주민들을 성 착취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소녀들을 (때에 따라 일대일로 사업의 후원을 받아) 중국 관여 대규모 인프라 및 투자 사업 지역과 인접한 장소에, 그리고 현지 지역 감독이 제한되는 경제특구(SEZ) 내에 건설된 (중국 국영 카지노를 비롯한) 위장 사업체와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성 착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버마에 소재하는 중국 국영 공장과 대규모 농장은 현지인 및 내부 이주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소유의 벌목 사업장도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국적자가 이끄는 범죄 조직들은 국경 간 인신매매 활성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 인신매매업자들의 여행 서류 위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중국 국영 기업들은 발칸(Balkan) 지역 전역의 제조 시설에서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콩고 남성과 소년들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중국 국영 광산에서 강제 노동의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조업 중인 2,900척의 중국 국적 원양어선단 선박에 고용된 아프리카, 아시아(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기타 지역의 많은 남성들은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불일치, 과도한 노동 시간, 열악한 생활 환경, 심각한 언어적·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의료 서비스 접근 거부, 의사소통 제한, 서류 강제 보관(document detention), 임금 임의 압류 또는 미지급과 기타 강제 노동 징후를 겪고 있으며, 한 번 항해 시 수개월 또는 수년 간의 해상 생활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상기 통계에는 타국의 위장회사(front company)를 통해 선적 등록된 중국 국영기업 소유 원양어선단 선박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실제 중국 국적자가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가진 원양어선단 선박의 실제 수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기 통계에는 유자격 회사를 앞에 내세워 실제 소유자의 신원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록을 은폐하고 조사 및 연간 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정식 원양어업 자격을 받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유자격 어업 회사에 불법적으로 “부속된” 중국 국영회사 소유 선박도 포함되지 않았다. 원양어선단 선원 중 다수는 중국 국내외의 무허가 또는 규제가 느슨한 비공식 중개망을 통해 채용되며, 이에 따라 선박 배치 전 수 개월 간 기숙사 생활을 강요당하는 동시에 규제를 받지 않는 고용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와 비용의 부과로 인한 부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중국 어로사업자들은 원양어선단 선원들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선원들은 부채를 무기로 하는 강압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일부 원양어선단 상급 선원들 또한 이렇게 채용된 신참 선원들에게 (타 연안국 관할 구역 등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밀수 관련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원들은 항만 국가 내에서 부당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취약성을 노출한다. 일부 중국 국영 어선은 선박 등록 번호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양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면서 북반 연안과 인도양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 역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강제 노동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신매매범들은 주변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미주에서 온 여성과 아동을 중국 내 강제 노동과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와 남미 여성들에게 중국 내 합법적인 일자리를 약속하고, 이들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상업적인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다.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문화로 인해 중국에서는 여아 100명 당 남아 105명이라는 왜곡된 성비가 형성되었으며, 관측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로 인해 상업적 성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외국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의 중개 결혼에 자발적으로 또는 속아서 동참하게 되는 상황(두 가지 경우 모두 인력 조달과 유지가 강제력 또는 강요에 의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여성과 여아들을 납치하거나 모집하여 중국으로 이송하고, 일부는 중국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또는 강제 노동을 겪게 된다. 불법 중개업자들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아프리카 여성과 소녀들과 중국 남성들 간의 강제·사기 결혼을 중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최대 3만 달러 수준이다.

남성들은 (때에 따라 그 부모와 함께) 이러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큰 빚을 지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과 여아들을 강제 노동이나 성 착취 인신매매에 투입하여 부담한 수수료 금액을 회수하려고 시도한다. 일부 중국 남성은 동남아시아 국가 수도로 가서 현지 여성 및 소녀들과 합법적인 혼인을 한 후, 중국으로 돌아온 다음 배우자에게 상업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중개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남성과 그 부모가 현지 및 동남아시아 여성과 여아를 기망하여 중국에서 사기 결혼을 한 후 강간 등이 포함된 강제 축첩 상태로 감금하여 강제 임신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강제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남성과 부모는 아이를 담보로 삼아 피해 여성의 강제 노동이나 성 노예 상태를 유지하거나, 당국에 학대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성의 이민자 신분을 이용해 협박하기도 한다.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버마, 베트남, 캄보디아의 여성들을 위와 비슷한 거짓말로 유인하여 눈을 가리고 이송한 후 규제되지 않은 병원 시설에서 강제 인공 수정을 시키고, 여성들이 출산할 때까지 은밀한 거처에 집단으로 감금한 후 국경을 넘어 이들의 본국으로 처벌 없이 이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 중국 여성들은 대만 남성과의 강제 또는 사기 결혼을 통한 성 착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성 착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이 포함된 착취 성격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소년들은 한 달에 한 번 보호자와 함께 귀국하는 조건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 목축업자, 기수, 서커스 단원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는 비자 제도 아래에서 강제 노동과 성 착취 인신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차별적 퇴거 정책으로 인해 거처를 잃은 중국 내 아프리카계 주민들은 노숙 상태 및 기타 경제적 고난으로 인해 성 착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중국에서 정식 이민자 신분 없이 생활하는 많은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다.

인신매매범들은 일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유인·약물·구금·납치를 통해 이들에게 상업적 성관계를 강요하며, 이는 유흥업소나 술집 내에서, 혹은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통해, 또는 강제 결혼과 관련하여 이뤄진다. 또한 (북한의 '감시인[minder]'인 경우가 많은) 인신매매범들은 탈북 여성들을 농업, 가사 서비스, 식당, 노래방, 커피숍, 공장 등에서 이뤄지는 강제 노동에 동원하며, "감시인"은 이들의 이동 및 의사소통 자유를 제한하고 임금을 압류하며 때로는 중국인 고객과 상업적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민을 중국 내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중국 관리들도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호텔, 식당, 원격 사이버 작업장에서의 강제 노동도 이러한 경우에 포함된다. 중국 국영 제조 시설 또한 해외 수출용 의료용 보호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